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 2019. 6. .

발 의 자 : 김기석 외 1명

1. 개정이유

의회 표창 수여 대상, 서식 및 절차 등을 재정비하여 표창의 객관적 기준 마련과 절차 간소화로 의회 표창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가. 표창 수여 대상기준 구체화(안 제5조~안 제7조)
- 나. 표창 서식의 변경 및 다양화(안 제8조)
- 다. 표창 대상자 추천 방법 및 내용 추가(안 제10조)
- 라. 상장 및 감사장 수여 절차 간소화(안 제12조)
- 마. 공적심사위원회 구분 및 운영 방법 변경(안 제13조)
-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문장 정비

3. 예산조치: 필요없음

4. 입법예고: 필요없음

5. 개정조례(안) : 별첨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표창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로 한다.

제2조 중 “마포구 지역사회 발전 및 의회발전”을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으로, “의회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각종”을 “각종”으로, “획득한”을 “거둔”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제4조(표창권자)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중 “각호의1에 해당되는”을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헌신적인 봉사로 구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제5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의회 운영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한 경우

5.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공무원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의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과 성과를 거둔 경우

3.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과 성과를 거두어, 그 기관장이나 단체장이 추천한 경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1”을 “각호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회발전”을 “의회 및 구의 발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의정활동”을 “개인이 의정활동”으로, “협조한 공적이 있거나 현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을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현신적인 봉사로 구의 발전 및 구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 중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1호 및 제2

호서식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중 “수여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표창 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회사무국장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회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

1. 의원이 표창 대상자를 추천한 경우,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6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2. 의회사무국 공무원과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해 추천된 표창 대상자의 경우,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제2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6명 이내 위

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전문위원과 팀장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 회의 개최가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종전의 제3항) 중 “경우에는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가”를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위원 과반수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로, “과반수”를 “과반수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심사의 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표창권자는 표창 수상자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표창대장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중 “정한 것 이외의 시행을 위하여”를 “규정한 것 외에 표창 시행에”로 한다.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5호까지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태두리

표지바탕 : 견직 크로스지 진감색

휘장 및 글씨 : 금박인쇄

마포구의회

[별지 제2호 서식]



← 금박지 인쇄

제 호

표 창 장

← 금색 인쇄

소속

직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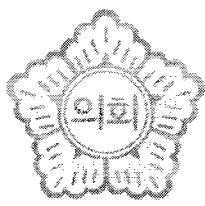
(표 창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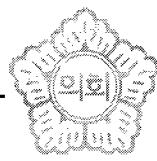
년 월 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장

(305mm×450mm)



— 금박지인쇄



← 금박지인쇄

제 호

상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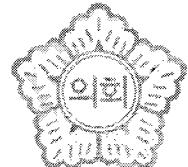
← 금색인쇄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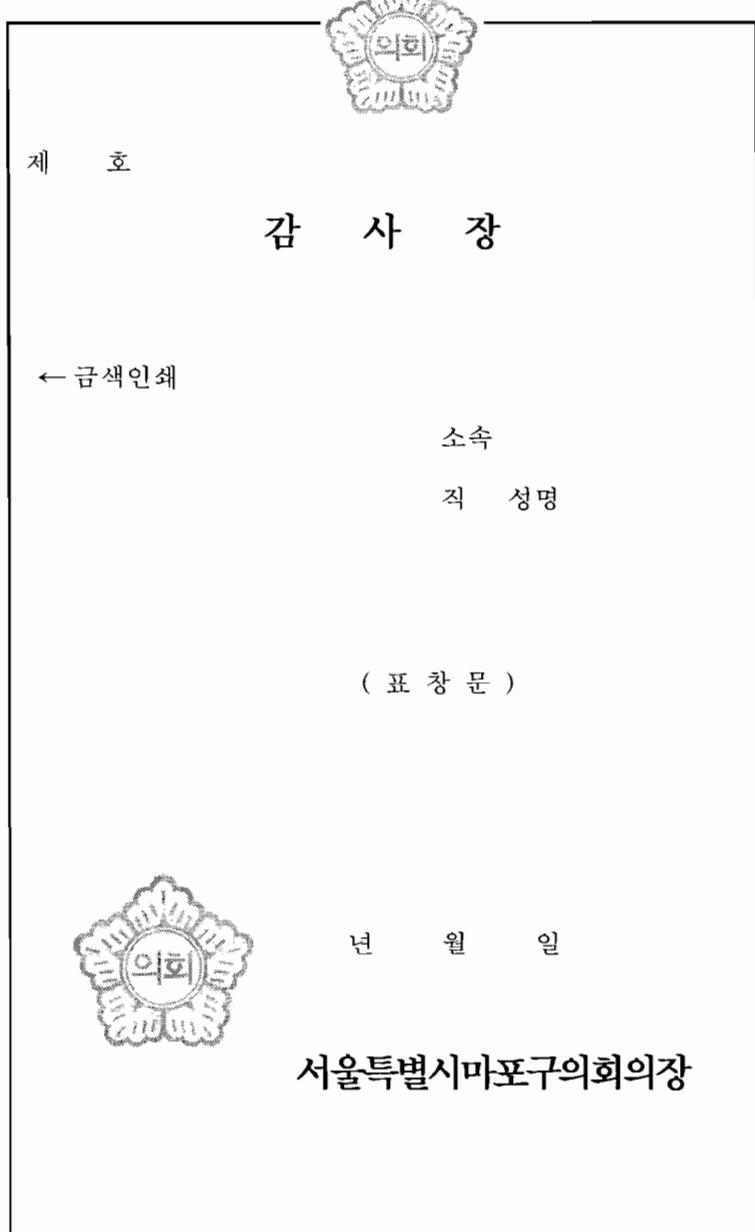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장

(305mm×450mm)



← 금박지인쇄



(305mm×450mm)

[별지 제3호 서식]

공적조서

(1) 성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5) 주소											
(6) 직업				(7) 소속							
(8) 직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14) 추천순위							
조사자											
(15) 소속				(15) 직위							
(17) 직급				(18) 성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인)					

주요 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별지 제4호 서식]

공적심사의결서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추천훈격					
의결주문					
이유					
년 월 일					
마포구의회 제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별지 제5호 서식]

표 창 대 장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u> <u>마포구의회</u>(이하 "의회"라 한다) 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표창대상) 서울특별시 <u>마포</u> <u>구</u> 지역사회 발전 및 의회발전에 적극 협조하고 그 공적이 현저한 자와 <u>의회</u>가 주관하거나 후원하 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기관, 단체 및 공무 원에게 수여한다.</p> <p>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p> <p>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 창권자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p> <p>제5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경우에 수여한다.</p>	<p><u>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u></p> <p>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u> <u>마포구의회</u>----- ----- -----.</p> <p>제2조(표창대상) ----- <u>마포구</u> (이하 "구"라 한다) 및 서울특별 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 다)의 발전-- 각종 ----- ----- 거둔 ----- -----.</p> <p>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p> <p>제4조(표창권자) 표창권자는 서울 특별시 <u>마포구의회</u>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p> <p>제5조(표창장 수여대상) ----- --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p>

<신 설>

1. (생 약)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의회운영 및 제도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지역사회 발전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신 설>

제6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의회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각종 경기 및 경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1. 현신적인 봉사로 구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현행 제1호와 같음)
2.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삭 제>

4.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의회 운영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한 경우
5.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공무원

제6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의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과 성과를 거둔 경우
3.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과 성과를 거두어, 그 기관장

제7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한 공적이 있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신 설>

제8조(표창방법)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단서 신설>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0조(표창대상자의 추천) 표창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의회 사무국장이 추천하되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나 단체장이 추천한 경우

제7조(감사장 수여대상) -----
-- 각호 어느 하나-----
-----.

1. 의회 및 구의 발전-----

2. 개인이 의정활동 ---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한 -----

3. 헌신적인 봉사로 구의 발전 및 구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
-----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추서) -----
-----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 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회사무국장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제12조(공적심사) 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을 요할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사 의결 할 수 있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의회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추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의회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

1. 의원이 표창 대상자를 추천한 경우,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6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2. 의회사무국 공무원과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해 추천된 표창 대상자의 경우,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제2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15조(표창대장 관리) ① 표창은 반드시 별지6호 서식에 의한 표창대장에 등재한 후 수여한다.

② (생략)

포함해 6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전문위원과 팀장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삭 제>

② -----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

④ 위원회 회의 개최가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 재적위원 과반수의 ----- 과반수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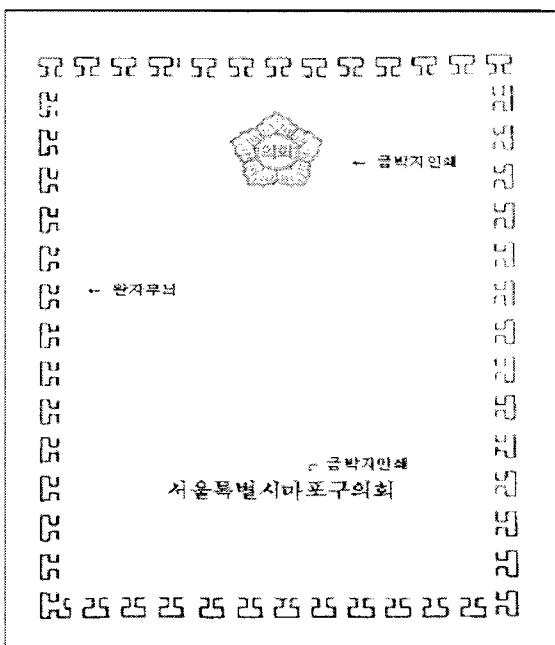
⑤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표창대장 관리) ① 표창권자는 표창 수상자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표창대장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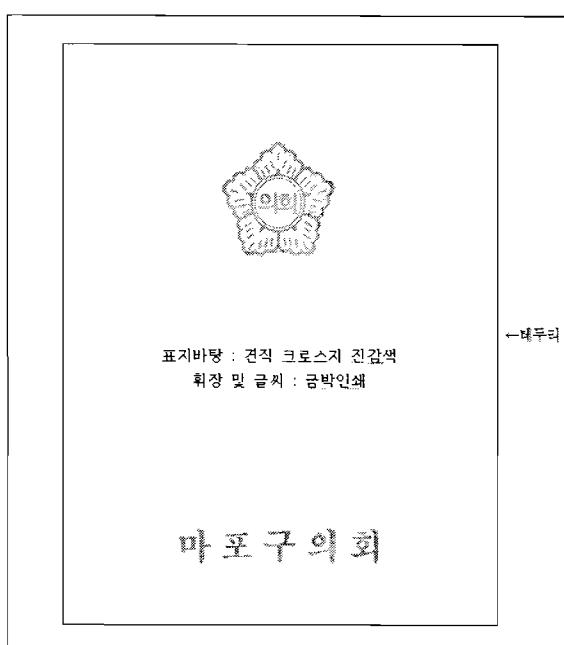
제16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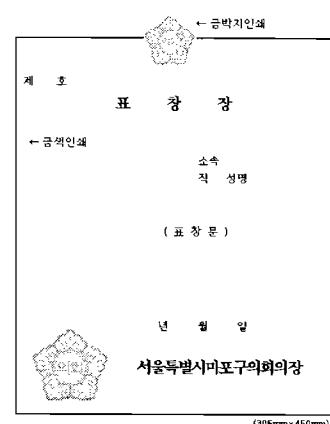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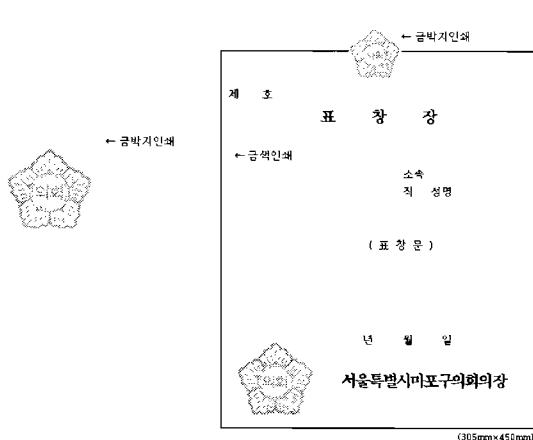
제16조(시행세칙) ----- 규정한 것 외에 표창 시행에 ----- -----.

별지 제1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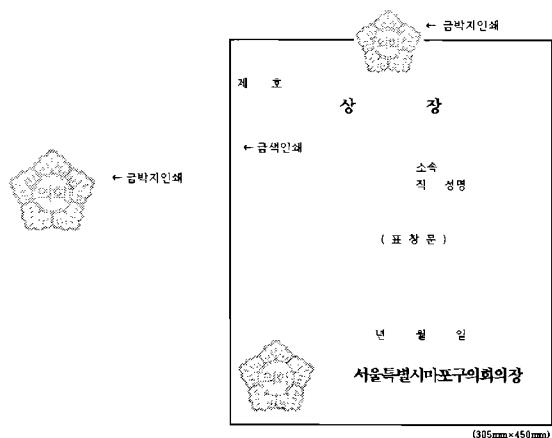


별지 제2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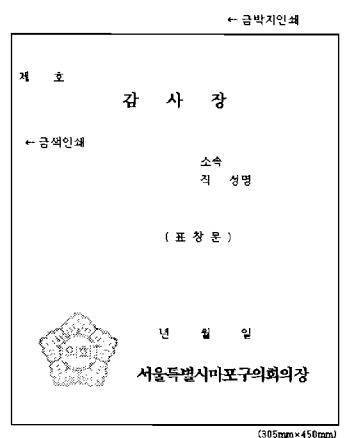
별지 제2호 서식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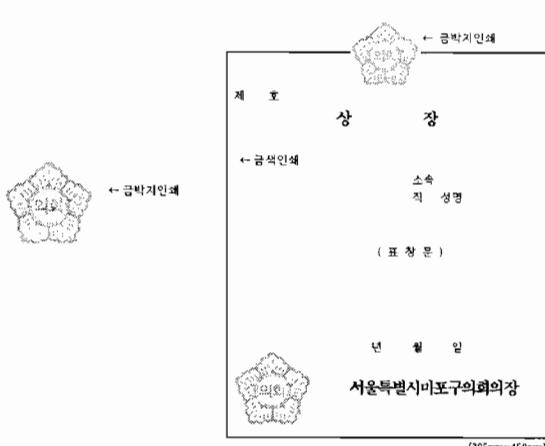


<없음>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305mm×450mm)

<삭제>

공적조서

(1) 성 명	(한자) (한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5) 주 소			
(6) 직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주의 기록이 훈령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 친 판 (인)	

(13) 추천후객	(14) 추천순위
교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19) 년 월 일	(20) 이 띵	(21) 년 월 일	(22) 이 띵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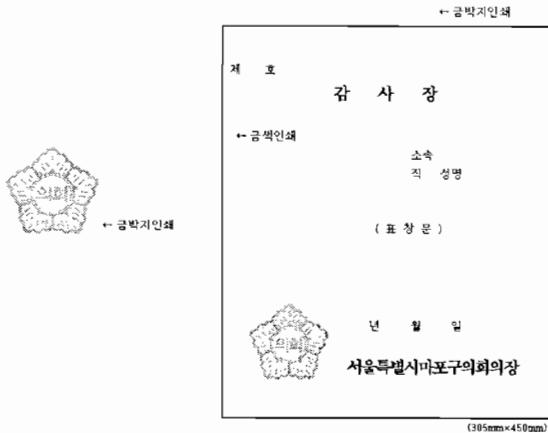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적사항

*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별지 제4호 서식



<없음>

별지 제5호 서식

		공적조서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본적		
주소		직업	직위	
수신문제				
공적사항				
위의 기록이 충실히 업용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성명 (인)				
확인자 직위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공적심사의결서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추천인격			
의결주문			
이유			
년 월 일			

별지 제5호 서식

<삭제>

<없음>

표 창 대 장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별지 제6호서식

별지제6호서식

표 창 대 장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삭제>